



대구지방법원

제 11 민사부

판 결

사 건	2012가합42110 손해배상(기)
원 고	1. A 2. B
피 고	1. C 2. D
변 론 종 결	2013. 8. 13.
판 결 선 고	2013. 9. 5.

주 문

1. 피고 C은,

가. 원고 A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1.부터 2013. 9.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1.부터 2013. 9.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D는



- 가. 원고 A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1.부터 2013. 9.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나. 원고 B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1.부터 2013. 9.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D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들에게, 피고 C은 각 194,766,000원, 피고 D는 각 92,796,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소속된 보조중개인들로서, 광고대행업을 하면서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매물로 나와 있는 부동산을 원고들이 개설한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광고하여 거래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연결을 해주고, 거래



가 성사되면 부동산중개사무소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다.

위와 같은 업무를 하기 위하여 원고 A는 E라는 홈페이지를, 원고 B는 F이라는 홈페이지를 각 개설하여 대구와 경산시의 원룸 등의 내부 구조 등을 촬영한 사진들을 게시하였다(이하 위 홈페이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홈페이지'라 한다).

원고들은 그들이 촬영한 사진들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권리를 상호 공유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C은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G, H이라는 홈페이지를 각 개설하였다.

피고 D는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I 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하였다.

한편 피고 C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G 홈페이지를 폐쇄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피고 C의 명의로 운영되던 H 홈페이지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D의 명의로 운영되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홈페이지 구성

이 사건 각 홈페이지는 대구와 경산시의 원룸 등을 지역, 부동산 종류, 가격, 면적 등으로 분류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특정 부동산 사진을 클릭하면 그 부동산에 관한 상세 정보와 함께 내부를 촬영한 사진들을 볼 수 있다.

다. 사진 무단 사용

피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2. 6. 14. 무렵 이 사건 각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던 원고들이 촬영한 부동산 매물 사진(이하 '이 사건 각 사진'이라 한다)을 원고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고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는데, 그 사항은 아래와 같다.



원고들		피고 C		피고 D
		G	H	I
원고 A	E	1,351장	3,078장	1,391장
원고 B	F	1,402장	2,775장	2,823장
소계		2,753장	5,853장	4,214장
합계		8,606장		4,214장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진,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각 사진은 사진저작물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사진 또는 이 사건 각 홈페이지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사진 또는 이 사건 각 홈페이지에 대한 저작자이다. 만일 이 사건 각 사진 또는 홈페이지가 사진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이다.

그런데 피고들은 저작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인 원고들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들의 홈페이지에 이 사건 각 사진을 게시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들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들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 또한 피고들의 행위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사진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있다.

3. 저작자의 권리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1)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이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창작물이라 함은 저작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로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6259 판결 등 참조).

2) 한편 사진저작물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그러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등 참조).

3) 그리고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바, 그 창작성은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있어야 하고,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라면 거기에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935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사진의 사진저작물 해당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사진은 원고들이 소속된 부동산중개사무소가 중개하는 부동산 매물들을 광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룸 등의 건물 내부 구조 등을 촬영한 것으로 그 사진들의 구체적인 촬영방법인 카메라의 각도나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촬영시점의 포착 등에 있어서 촬영자의 개성이나 창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촬영 후의 현상과 인화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이나 창조성이 가미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사진을 사진저작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각 사진 및 이 사건 각 홈페이지의 편집저작물 해당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각 홈페이지는 원고들이 소속된 부동산중개사무소가 중개하는 부동산 매물을 대중에게 알리고 부동산 거래를 원하는 사람 등에게 부동산 매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동종 업체의 홈페이지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구성 및 내용으로 그 소재의 선택 및 배열방법에 있어 제작자의 개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홈페이지의 구성 및 내용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편집저작물로 보기는 어렵다.

라. 소결론

이 사건 각 사진 또는 원고들의 홈페이지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홈페이지의 데이터베이스 해당 여부

1)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9호). 또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20호).

2) 살피건대 이 사건 각 홈페이지는 대구와 경산시의 원룸 등을 지역, 부동산 종류, 가격, 면적 등으로 분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수록함으로써 이용자가 이 사건 각 홈페이지로부터 개별 소재인 매물 정보 및 이 사건 각 사진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홈페이지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들은 직접 원룸 등의 사진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모아왔고, 이와 같이 수집된 정보를 여러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수록함으로써 부동산 중개 정보 홈페이지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홈페이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해당한다.

나. 원고들의 권리 침해 여부

1)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그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이하 '복제등'이라고 한다)할 권리를 가진다(동법 제93조 제1항).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다만,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그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의 복제등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등으로 본다(동법 제93조 제2항).

2) 살피건대, 피고들은 그들의 부동산중개업을 위하여 원고들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이 사건 각 사진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 그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할 권리를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동종 업계에서는 다른 부동산중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사진들을 게시하는 것은 일반적이므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는 없다고 하면서 묵시적으로 사용을 허락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뿐더러, 원고가 이 사건 각 홈페이지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



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이상 그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한편 원고들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저작인격권 내지 이와 유사한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그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는 저작권법 제16조 내지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저작재산권에 대응하는 권리로 볼 수 있을 뿐, 동법 제11조 내지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저작인격권에 대응하는 권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게 저작인격권 또는 이와 유사한 권리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적용 여부

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나) 원고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이 사건 각 사진 한 장당 20,000원으로 산정한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홈페이지의 제작기간, 이 사건 각 사진의 수량 동종업계에서 이와 같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수 기준, 사용기간 및 횟



수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사진 한 장당 20,000원으로 하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의 적용 주장은 이 유 없다.

2) 저작권법 제126조 적용 여부

가)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동법 제126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이 사건 각 홈페이지의 제작기간, 이 사건 각 사진의 수량, 동종업계에서 이와 같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수 기준, 사용기간 및 횟수, 대중이 이 사건 각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이 사건 각 사진을 보고 바로 부동산거래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각 홈페이지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은 피고 C에 대하여 20,000,000원, 피고 D에 대하여 12,000,000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C은 원고 A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2. 6. 21.부터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9. 5.까지는 민법에 의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1.부터 2013. 9. 5.까지는 민법에 의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D는 원고 A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2. 6. 21.부터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9. 5.까지는 민법에 의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1.부터 2013. 9. 5.까지는 민법에 의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일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적 손해 부분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저작재산권자등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일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데 이는 재산적 손해부분에 관한 것이므로, 일반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적 손해 부분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정신적 손해 부분

통상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재산상의 손해 이외에 명예나 신용의 훼손 등으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



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36159 판결 참조), 피고들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원고들의 권리 침해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전보되지 않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6.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하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자는 그 이득액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피고들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얻은 이득액을 입증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숙
	판사	김일수
	판사	박주영